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공고 내용 :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 기간 : 2019. 7. 11. ~ 2019. 7. 25.
3. 공시송달 내역

연번	구분	부과대상자		부과(예정)내역				공시송달 사유
		성명	주소	재산의 표시	점유면적 (㎡)	부과대상기간	부과금액 (원)	
1	공유재산 변상금	김**	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**	홍제동 308-74	1.64	2014.07.02.~ 2019.07.01.	416,230	폐문부재
2	공유재산 변상금	이**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25번길 **	홍제동 308-74	1.61	2014.07.02.~ 2019.07.01	407,050	폐문부재

4. 송달내용 : 부과예정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까지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·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문의사항 : 서울 서대문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(☎ 02-330-1181)